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 및
연결취득자법인의 자산 처분손실 조정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illegible]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법인세법」 제76조의14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및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과 관련하여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2. ①법인명 및 ②사업자등록번호란: 「법인세법」 제76조의14제2항제1호와 관련된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의 경우 해당하는 연결모법인 및 연결자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세법」 제76조의14제2항제2호와 관련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의 경우 해당하는 연결모법인 및 연결자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③구분란 및 ④코드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자산처분손실의 종류 및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구 분	코드	처분손실의 내용
피합병법인	100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에 한정한다)을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연결자법인	200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연결자법인이 된(설립등기일부터 연결자법인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연결자법인이 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의 처분손실
연결모법인	300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연결모법인이 된(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연결모법인이 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의 처분손실

4. ⑤결산서상 자산처분손실란: 결산서상에 계상한 자산처분손실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⑥손금불산입란: 결산서상에 계상된 자산처분손실의 합계액 중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⑦익금불산입란: 피합병법인의 자산처분손실, 연결모법인 및 연결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을 결산서상에 과소계상하여 세무조정에 의해 익금불산입(손금산입)된 금액을 적습니다.
7. ⑨손금산입 한도란: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의 ㉔란의 각 연결법인의 연결수정소득금액(자산처분손실이 포함되지 않은 연결수정소득금액) 중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의 경우 연결모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적고, 기존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의 경우 합병 전 연결모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을 적습니다.
또한,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손실의 경우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을 적고, 연결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의 경우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을 적습니다.
8. ⑩처분손실 이월액란: ⑧손금산입한 자산처분손실 계란의 금액이 ⑩손금산입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 ⑧손금산입한 자산처분손실 계란의 금액에서 ⑩손금산입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